화물자동차운송가맹약관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화물자동차운송가맹계약(이하, "본 계약"이라 한다)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 ㈜한익스프레스(이하, "갑"이라 한다)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(이하, "을"이라 한다)간의 가맹계약에 관한 사항과 운송인의 책임 및 한계, 그리고 화물정보망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용어의 정의)

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가맹계약"이라 함은 "갑"이 "을"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·서비스표·상호·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(이하, "영업표지"라 한다)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.
- 2. "가맹본부"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사업자(가맹희망자 포함)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케 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화물정보망이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과 관련된 화물정보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일체를 말한다.

제 3조 (계약의 적용)

- 1. 본 계약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.
- 2. 본 계약이 관련 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3.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,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상법 및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2장 가맹계약에 관한 규정

제 4조 (권리의 부여)

"갑"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"을"에게 부여한다.

- 1. 상호, 상표 등의 사용권
- 2. 가맹사업과 관련한 등기, 등록된 권리

- 3. 각종 기기를 대여 받을 권리
- 4. 기술의 이전 등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
- 5. 기타 운송가맹사업자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권리로써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

제 5조 ("을"의 의무)

- 1. "을"은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"갑"의 영업상의 비밀을 계약기간을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 "을"은 "갑"의 허락 없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다.
- 3. "을"은 본 계약기간 동안 "갑"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 종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다.

제 6조 (영업지역)

"을"의 영업지역은 "갑"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국으로 한다.

제 7조 (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)

- 1.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쌍방합의 하에 계약 발효일을 조정할 수 있다.
- 2. "갑" 또는 "을"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부터 3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3. 제 2항의 계약종료의 통지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"을"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"갑"이나 "을"에 천재지변, 파산, 화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8조 (가입비 및 계약이행보증금)

- 1. 본 계약의 가입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.
- 2. "갑"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"을"과 별도 합의를 통해 "을"로부터 가입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우령한 경우, "갑"은 "을"의 반환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가입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"을"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9조 (정기납입경비)

"을"의 "갑"의 영업표지 사용 및 "갑"에 의한 경영지원의 대가는 무상으로 하며, 별도의 정기 납입경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 10조 (교육 및 훈련)

- 1. "을"은 "갑"이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.
- 2. 교육은 정기교육,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.
- 3. 정기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"을"에게 서면 또는 화물 정보망(공지사항)으로 통지한다.
- 4. 특별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1주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화물정보망

(공지사항)으로 통지한다

- 5. 교육비용은 무료이다.
- 6. "을" 필요시 자신의 비용으로 ""갑" 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.

제11조 (경영지도 및 감독, 시정권)

- 1. "갑"은 "을"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"을"이 요청하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.
- 2. "을" 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"갑"에게 경영지도를 요청 할 수 있다.
- 3. "갑"은 "을'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 1회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 (설비의 관리 등)

- 1. "갑" 은 "을"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비. 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.
- 2. "을"은 대여받은 설비 및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보존·관리하여야 하며, 매매 또는 담보 제공, 그리고 질권설정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.
- 3. "을"이 대여받은 설비 및 기기를 멸실·훼손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"갑"에게 배상하여야 한다

제 13조 (영업양도)

- 1. "을"은 "갑"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본 가맹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.
- 2. 양수인은 "을"의 "갑"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. 가입비는 면제된다.

제14조 (영업의 상속)

- 1. "을"의 상속인은 "을"의 본 가맹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을 수 있다.
- 2. 상속인이 본 가맹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 할 경우에는 "갑"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5조 (화물운송위임탁의 중지)

- 1. "갑"은 다음 각호의 경우, 7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"을"에 대한 화물운송위탁을 중지할 수 있다. 단, 위 기간 중 "을"이 해당사유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가. "을"이 1개월에 3회이상 화물의 수탁 및 인도시기를 위반한 경우
 - 나. "을"이 "갑"으로부터 본 계약상 의무위반사실을 지적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
- 2. "갑"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화물운송위탁을 중지할 수 있다.
 - 가. "을"이 제4조에 규정된 권리를 부정한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
 - 나, "을"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
 - 다. 천재지변,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"을"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
 - 라. "을"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"갑"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"갑"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

- 마. "을"이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
- 바. "을"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"갑"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
- 사. "을"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
- 3.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"갑"은 화물운송위탁중지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화물운송위탁 재개조 건을 "을"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 (계약의 해지)

- 1. "갑" 은 "을" 에게 제15조 제 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2. "을" 은 "갑" 이 약정한 권리의 부여.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3. "갑" 또는 "을" 은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가.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
 - 나.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
 - 다.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 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
 - 라. 천재지변,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사업 유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
 - 마. "을"이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
 - 바. "을"이 "갑"의 시정요구를 따른 후,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이상 반복한 경우
 - 사. "을"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
 - 아. "을"이 "갑"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하는 등 "갑"의 가맹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
- 4. "갑"과 "을"은 계약기간 중에도 양 당사자의 별도서면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7조 (계약의 종료와 조치)

- 1.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. "을"은 즉시 상호. 상표. 서비스 표. 휘장.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한다.
- 2. 제1항의 철거.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"을"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"을" "갑"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"갑"이 부담한다.
- 3. "갑"은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3장 화물운송에 관한 규정

제 18조 (운송의 위탁)

- 1. "갑"은 "을"게게 휴대전화, 유선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화물운송 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에 필요한 부대작업을 의뢰한다.
- 2. "을"은 "갑"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을 각 출고분당 도착지를 명시 구분하여 배차하여야 한다.

제 19조 (운송의 책임과 의무)

- 1. "을" 은 "갑" 또는 "갑"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 위임 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 의무로써 화물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정확.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.
- 2. "을"은 "갑" 또는 "갑"이 지정하는 자의 지시 없이 화물 적재, 운송, 목적지의 임의 변경입고 등으로 "갑"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- 3. "을"은 반드시 본인회사 소속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,
- 4. "을"은 항시 차량을 정비하고 "갑"의 위임 또는 의뢰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운송을 개시하여 야 하며, 상차완료 시점으로부터 "갑"과 사전에 약정한 시간 내에 운송을 완료하여야 한다. 단, 천재지변, 사변,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5. "을"은 우천, 강설 등 기후조건에 관계없이 운송에 임하여야 하며, 유개차 및 여타 시설을 준비하여 화물을 안전하게 상차, 수송하여야 한다, 단, 폭우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송이 불가함이 "갑"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- 6. "을"은 목적지까지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여 "갑" 또는 "갑"이 지정한 자에게 화물을 인도 함과 동시에 화물인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.

제 20조 (작업관리 및 보고의무)

- 1. "을" 또는 "을"의 사용인은 운송 및 부대작업에 관하여 "갑" 또는 "갑"이 지정한 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- 2. "을"은 매일 운송작업의 현황 및 경과보고를 당일 혹은 늦어도 익일까지 "갑"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급한 상황이 발생시에는 즉시 연락을 취하여 상호협조.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- 3. 1항 및 2항의 보고. 연락의 결여 및 지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"을"에게 귀속되다.

제 21조 (운송료)

운송료는 쌍방 합의된 요율표에 준한다.

제 22조 (운송료의 청구 및 지불)

1. "을"은 운송료를 운송완료 후 "갑"이 요구하는 청구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당월말까지 세금

계산서 발행 청구한다.

2. "갑"은 운송료 청구분에 대해 검토 후 쌍방 합의한 날까지 약정계좌로 현금 지급한다.

제 23조 (손해배상)

"을"은 "을" 또는 "을"의 사용인의 고의 , 업무상의 과실 기타 "을" 또는 "을"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화물손상, 화재, 도난, 화물부족, 등으로 인해 "갑"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"갑"의 손해액 전부를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24조 (상계)

"갑"은 "을"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을경우, "갑"이 "을"에게 지급할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.

제 25조 (보험 등의 가입)

- 1. "을"은 제24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운송 가맹사업자에게 가입증명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.
 - 2. "갑"이 고가물의 운송을 운송 의뢰하는 경우 "을"은 "갑"과 협의를 거쳐 기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 26조 (권리의 양도 등)

"을"은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 일부 측은 전부를 "갑"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. 저당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, "을"이 타사에 흡수 합병될 경우 "을"의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박탈된다.

제4장 화물정보망 이용에 관한 규정

제 27조 (화물정보망의 이용료)

- 1.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"을"은 "갑"이 제공하는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.
- 2. "을"이 "갑"으로부터 "갑"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위탁을 받았을 경우, 화물정보망 이용료는 "갑"이 "을"에게 지급할 월 운송료의 %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3. 화물정보망 이용료 납부방법은 "갑"이 "을"에게 지급할 운송료와 상계 처리한다.
- 4. "갑"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위탁을 받은 후,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화물정보망 일반이용자의 화물정보망 이용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용료로 부과한다.

제 28조 (사용자 이름 및 전산망 보안)

1. "을" 은 화물정보망 이용 시 자신의 관리.책임하에 고유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

보유하여야 하다.

2. "갑"은 자료의 유출. 변조. 파괴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.

제 29조 (시스템의 정지)

- 1. "갑"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
- 2. 위 제 1항에 의한 시스템 중단의 경우에는 "갑"은 "을"에게 제3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. 다만, "갑"이 통제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시스템의 중단(관리자의 고의과 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)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제 30조 (운송가맹점에 대한 통지)

"갑"이 "을"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. "갑"에게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개별 통지하거나 화물정보망 "공지사항"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31조 (정보보호)

- 1. "갑"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"을"이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.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2. "갑"은 "을"에 대한 정보 수집 시 화물정보망의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수집한다.

제5장 재판관할 및 첨부서류

제 32조 (분쟁의 예방 및 분쟁의 해결 . 준거법)

- 1. "갑"과 "을"간에 분쟁 발생시 우선 양자 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.
- 2. "갑"은 "을"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해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
제 33조 (관할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 34조 (첨부서류)

"을" 은 "갑"에게 사업자등록증, 신청인신분증, 운송비결제용 통장, 차량등록증, 적재물배상 책임보험가입증권, 각각 사본 1매를 제출한다.

제 35조 (영업표시)



20 년 월 일

"갑" 화물자동차 가맹본부

상호 : ㈜ 한익스프레스

사업자번호: 130-81-16025

주소 :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103

대표이사 : 이 재 헌

연락처: 070-4398-2635

"을"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

상호 :

사업자번호:

주소 :

대표자 :

연락처: